정치자금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11. 2009고합153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사】김양수 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 변호사 이홍권 외 5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,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158,383,16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